



문화재청



수신 내부결재
(경유)

제목 '설과 대보름', '한식', '단오', '추석', '동지' 국가무형문화재 신규종목 지정 보고

「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12조(국가무형문화재의 지정)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(국가무형문화재의 지정)에 따라 '설과 대보름', '한식', '단오', '추석', '동지'를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하고,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자 합니다.

1. 지정내용

- 가. 문화재명: '설과 대보름', '한식', '단오', '추석', '동지'
- 나. 지정방식: 특정 보유자나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는 '공동체종목'으로 지정

2. 지정일자: 관보 고시일

3. 관련 조치사항

- 가. 관보 고시 및 보도자료 배포
- 나. 지방자치단체에 지정 내용 알림

- 붙임 1. 2023년도 무형문화재위원회 전통지식분과 제4차 회의 의결서 1부
 2. '설과 대보름', '한식', '단오', '추석', '동지'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관보 고시(안) 1부. 끝.

주무관	이정화	입업사무관	김현숙	무형문화재과	문화재정책국
차장	이경훈	문화재청장	최응천	장 이재필	장 직무대리 김종승
협조자			2023. 12. 11.		
시행	무형문화재과-3894			접수	
우	35208	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, 1동 8층 무형문화재과 (둔산동)			/ http://www.cha.go.kr
전화번호	042-481-4994	팩스번호	042-481-4979	/ jhlee8209@korea.kr	/ 대한민국 공개